



가족회사 운영 규정

제정일	2019. 7. 1
개정일	2022. 3. 1
개정차수	1차
담당부서	산학협력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가족회사 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가족회사” 라 함은 본 대학교와 기업체간 기술·경영지도, 산학공동연구, 교원 연수, 학생 취업, 학생 현장실습 및 장비·시설의 공동 활용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본 대학교에 가족회사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고 협약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.
2. “기업체” 라 함은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이 필요한 기업, 연구소,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.
3. “전담교수” 라 함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서 개별 가족회사와 관련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교원을 말한다.

제 3조 (담당부서) 가족회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서울대학교 산학취업처(이하 “산학취업처”이라 한다)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가족회사의 가입 접수, 승인, 탈퇴 및 정보관리 등의 행정업무
2. 가족회사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
3. 가족회사 상담 및 지원
4. 가족회사 전문분과별 운영 및 지원
5. 교원 업적평가 자료 제공
6. 기타 가족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 4조 (가입 및 승인) ① 가족회사의 신규가입(협약체결)을 하고자 하는 학과 및 기업체는 가족회사 회의개최계획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산학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산학취업처는 가족회사회의 개최계획서를 접수한 후 산학취업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총장은 대학의 발전목표 및 대학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한다. 다만, 상호간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5조 (협약) ① 본 대학교는 가입이 승인된 기업과 가족회사협정서(별지 제2호 서식)에 의거하여 협약을 체결하되, 협약내용은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.

②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해당 전담교수를 통해 기업체로 발송하며, 전담교수는 가족회사 협약체결 후 협약서 1부(본 대학교 보관용)를 산학취업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약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협약이 결렬된 것으로 본다.

제 6조 (전담교수의 역할) 가족회사 전담교수는 해당 기업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에게는 현장실습, 인턴십(학기제 현장실습),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기술·경영지도, 산학공동연구 등의 참여로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활동의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7조 (가족회사에 대한 혜택) 본 대학교는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산학연계 연구과제, 기술지도 및 자문, 산업체 채직자교육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며, 산학협력 기금을 기탁한 가족회사에게는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
2. 본교 지식재산권 자료 제공 및 기술이전 등의 상담 지원
3. 기술교류회 및 포럼, 산학협력 협의체 등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획득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족회사 의견 제안
4. 대학 보유 시설 및 공동장비 활용 지원
5. 정부 및 지자체 주관의 연구개발과제 제안 컨설팅 및 산학 공동기술개발 참여를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 매칭 지원

제 8조 (제반경비) 가족회사 협약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산학취업처와 기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9조 (협약의 해지 등) ① 가족회사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또는 휴·폐업으로 확인될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지 처리한다.
② 가족회사가 명예를 실추하여 더 이상 본 대학교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산학협력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0조 (정보보호) 산학취업처는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,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.

제11조 (기타)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취업처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가족회사 회의개최 계획서

월		학부(과)			학부(과)장	(인)	
순번	협약체결	일 시	업 체 명	담당교수	참여교수	사용예정금액	비 고
1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2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3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4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5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6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7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8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9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10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11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12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13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14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15	신규/ 기체결/ 미체결					원	

【별지 제2호 서식】(개정 2022. 3. 1)

0000- 000

가족회사 협약서 (산학연 연계교육 협약서)

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과 기술교육체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인재채용, 교육협력, 기술개발 및 제반 업무의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와 기업명(이하 “업체” 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산학협동을 협정한다. 단,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00000학과(이하 “학과” 라 한다) 학과장에게 가족회사회의 위원직을 위임한다.

- 제1조 “대학”과 “학과”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전문 기술인력의 공동양성과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“업체”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하여 수요 맞춤형 교육에 적극 협조한다.
- 제2조 “업체”는 “대학”과 “학과”가 우리나라 산업교육 진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으로 양성된 우수한 인재를 교류 및 채용에 협조를 한다.
- 제3조 “대학”과 “학과”는 “업체”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설인프라, 기술개발, 재직자교육 등 공유·협업을 통하여 상호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.

부 칙

- 본 협정은 “대학”과 “학과” 및 “업체”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.
- 본 협정의 시행기간은 6년으로 하고, “대학”과 “업체”의 이의가 없는 한 유효하다.
- 본 협정은 시행기간 만료일까지 “대학” 및 “업체”의 이의가 없는 한 재협정으로 인정한다.

0000년 00월 00일
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

기업 주소

동서울대학교 총장

(주) 기업명

00000학과